

경험 여부	단위(%)	
	있다	없다
치벌에 대한 태도		
치벌해야 한다	56.2	76.0
치벌하지 말아야 한다	43.8	24.0
계	100	100

치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이 더 치벌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경험이 있는 노인이 치벌을 반대하는 경우가 43.8% 인 반면 경험이 없는 노인은 24%가 치벌을 반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험이 있는 노인이 오히려 치벌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이 학대받았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나 가족, 또는 친척이 대외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감싸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6. 학대 피해자의 특성

(1) 교육 수준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무학 또는 국졸이었다. 학대받은 경험은 고졸 이상의 학력 층에서 학대의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이 26.5% 로 이중 여성 노인이 66.7%, 남성 노인이 33.3% 로 얼핏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학대받으며 사는 것 같지만 조사 대상 자중 여성이 많아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자립 능력

노인은 신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의존적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자립 능력의 정도가 학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있는 노인이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는 반면 학대의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없는 노인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노인 스스로가 자립 능력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I. 끝맺는 글

과연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몇 사람 가량이나 될까? 비올로는 몇 %일까? 노인 학대의 발생률이 적고 피해자 수가 적다면 그냥 두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신변에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있는가의 개략을 파악해 두는 것은 금후의 대책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인 학대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노인 학대’ 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 되고 거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위기일지도 모른다. ‘정말? 설마- 그렇지 않겠지’ 가 아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다만 경로호친 사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알기 쉬운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노인학대를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복잡한 현상이라 규정할 수 있다.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학대는 그에 따르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왜 학대를 받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들이 동원되었지만 Johnson은 노인 학대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어느 한 요소만을 짚어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다른 종류의 학대는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육체적 학대는 받는 쪽보다는 가하는 쪽의 성격이 더 많이 좌우된다고 한다. 따라서 결론은 다양한 종류의 예방책 및 중재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대에 수반되는 것은 고통, 잔혹, 착취와 불필요한 괴로움이다. 이 고통의 중재는 단지 노인을 우선시 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도덕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정은 시급하며, 정책 입안과 그에 따른 실천 방안 그리고 전문가를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은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

가칭 ‘노인학대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은 노인의 경우 현재 있는 노인복지법 중 새로이 삽입해도 좋고 또는 약자들만 모아 별도로 해도 좋지만 필요한 내용, 정신이 함께 담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는 법제에도 아동의 권

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아동 학대를 금지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한다. 신고의 의무화는 아동학대의 발견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학대의 치료적 개입과 예방의 후속절차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고가 있더라도 누가 이것을 전담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관련법 제정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대의 다양성과 그 원인들은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것을 분별 있게 중재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두어서 다방면에 걸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조사, 관찰, 기록과 다각적인 훈련, 진단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세우는 시도와 방책이다.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 대다수의 미국인에 의해 학대 사례의 의무적인 신고와 성인 보호 대책이 제공되는 입법이 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돕는 충분한 자원은 유용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인 학대 방지 대책 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시설 법의 1273장의 성인 학대 통보 의무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보 의무가 있는 자

노인간호사 담당자 (지구의 보호시설 장도 포함)사회복지담당원, 보호관찰관, 사회사업가, 인가 받은 가정복지봉사원, 재택간호기관의 직원, 간호케어시설과 의사, 간호사, 치과의, 발병치료사, 스텝, 카운슬러 등

2. 통보 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벌금

통보 의무가 있는 자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불 이하의 벌금을 문다.

3. 통보까지의 제한 시간

전화의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사회복지 국으로 우편의 경우는 36시간 이내에 사서함으로

끝으로, 정책집행자, 학대자, 희생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이해심간에 공통점이 없다면 학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즉 노인을 위한 지원이나 그들에 대한 태도—상처받기 쉬운 어른을 보살피는 정책 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보살피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과 정책 집행 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또한 외관상으로 소수인 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학대받는 노인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글을 맺겠다.

딸들의 시선이 내게서 멀어진 뒤로 죽 곧 나의 마음은 한겨울과 같았다. 내게는 더 이상 슬픔을 견딜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 바보 취급당하기 위한 삶이지 않은가, 그 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주 작은 기쁨을 강매하면서도 그 애들이 주는 굴욕을 꼭 참아 오지 않았던가

이 애비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다니 내가 저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음에도 그 애들은 날 위해 한시간도 내주지 않는구나 목이 마르고 허기를 느낀다. 심장이 타버릴 것 같다. 딸들은 나의 단말마의 고통에도 준처럼 타 주지 않는다.

이전 딸을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죽음에 압박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애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주건을 짓밟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거나 한 걸까? 하늘에는 신이 존재한다. 어쩌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주실 지도

아니다 딸들이 용 것이다. 애들아 타 나오. 한번 더 나를 만나러 타 나오. 그리고는 키스해 나오. 너희들이 저 세상으로 가는 애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그렇게 해준다면 아버지는 너희들의 일을 신에게 빚어 그 애들은 착한 애들이었다고 신에게 변호를 해 주마.

누가 뭐래도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 애들은 죄가 없어요. 하느님 모두에게 그렇게 말해 주세요. 나로 인해 그 애들이 싫은 소리 듣지 않게 해 주세요. 모든게 제 잘못이에요. 저를 짓밟도록 버릇등인 게 바로 저 인걸요.

날 속은 거야. 딸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한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어. 이제야 모든게 확실해. 언제나 목이 마르고 물을 제대로 못마시는 생활이 10년째 — 사위들이 내딸들을 빼앗아 가 버렸어. 그 애들과 결혼한 이래로 내딸이 없어진 거지. 이 세상 사당들이여 사위라는 놈들은 딸들을 망쳐 놓는 일당이오 딸들을 오염시켜 놓는 나오. 결혼을 없애 버려, 법률을 망쳐 주오 — 애들아 제발 타 나오 이 애비는 이제 이 세상을—— 그는 막대기로 한대 맞은 것처럼 ‘퍽’ 하고 머리를 베투워듯 떨어뜨렸다.

손이 딸들의 머리카락을 만지려는 듯이 이불 위에서 꿈틀 꿈틀 움직였다. ‘딸들을 축복한다’ 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는 말했다.

金子善彦(1986)의 노인 학대 본 문중에서

도움준 책

윤진(1995). 폭력 없는 가족. 유네스코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4, 8월). 노인 범죄 및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미간행물)

金子善彦(1986) 老人虐待

Kosberg, Jordan I. (1988). Preventing elder abuse :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28(1). 43-50.

Salend, E, Kane, R. A., Satz, M. and Pynoos, J.(1984) Elder abuse reporting: Limitations of statutes. The Gerontologist. 24, 61-69.

Wilson, Nancy L. etc(1994). What's new in elder abuse programming? Four bright ideas. The Gerontologist. 34(1). 126-129.

모자일시 보호실에 온 가정 폭력 실태

고 송 주

(광주광역시 여성 회관 상담 실장)

1. 피해 여성 쉼터의 필요성

평소 개별 신상에 대한 고충 상담을 하다 보니 의외로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이 많았다.

저희 상담실의 경우 가정 생활에서 부부갈등중 1년이면 200여명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그들에게 단순히 고충만 들어주고 원인은 찾아 해소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상담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다루어진 수많은 사례들은 구타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가정을 뛰쳐나왔으나 막상 갈곳이 없음을 한탄하고 하루쯤 지난 후에는 자식 때문에, 친정과 시집 식구들의 고통을 나하나의 희생으로라도 막아야 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결국 다시 귀가하는 안타까운 입장을 많이 보게 되었다.

여기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가출후 부담 없이 편히 쉴 수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일이겠구나 싶었다.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본 결과 별도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유희공간을 활용한다면 가능한 것 같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기존 부녀 복지시설이 우리 여성 회관에 인접해 있어 실제 목적 사업인 직업보도 대상이 매년 감소되어 시설에 유희공간이 있겠고 시설에게 협조한다면 가능하겠다 싶어 시설장과 협의 가능성 타진 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쉼터로서 꼭 필요한 집기류와 침구류, 주부식비, 피복비 등 포함 추정해 보니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소요 판단이 되어 지난 1992년 2월에 광주 여성의 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2. 광주 모자일시 보호실의 모습

가. 입소자 분석

1992년 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지난 3년동안 150명(모 103,자 47)이 모자일시 보호실을 이용하였는데 그중 94년 입소자를 대상으로 본고의 참고 자료로 하고자 몇 가지 분석을 해본다.

94년도 입소자는 母가 35명 子가 21명으로서 56명이었는데 35명의 아내들의 나이는 20대가 11명, 30대가 19명, 40대가 4명, 50대 이상은 1명 순으로 30대 미만이 30명으로 전체 86%이다. 이들의 학력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19명, 고졸 13명, 전문대 이상 졸업이 3명으로 저학력층이 조금 많은 편이며 입소시 동반한 아동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17명이 있고 7세부터 11세가 4명으로 21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의 실제 자녀수를 보면 자녀가 1명인 가정이 12인, 2명이 12인, 3명이 5인, 4명이 2인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도 4인이었다.

따라서 입소자 가정의 전체 자녀수를 보면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30명(남 21, 여 3)이고 7세 이상 11세까지가 13명(남 2, 여 11), 12세 이상 15세까지 2명(여) 그리고 18세 이상이 18명(남 15, 여 3)으로 35세대의 전 자녀수는 63명(남 38, 여 25)이었다.

남편의 학대 유형은 정신적 학대 5명, 물리적 학대 30명(발,주먹으로 구타 22, 흉기 사용 6, 물건 던지기 2)이며 학대의 원인은 남편의 문제가 32명(이상성격 17, 주벽, 도벽 7, 의도 4, 의처증 4)이며 본인 때문에 2명 시부모 갈등이 1명이었다.

첫 학대 시기는 결혼전 부터가 8명, 결혼 6개월 이내 9명, 결혼 1년 이내 9명, 결혼 3년 이내 8명 그리고 3년 이상이 1명으로서 신혼기인 결혼 1년 이내에 이미 구타가 시작된 사람이 26명으로 74%였다.

구타시 자신의 태도는 무조건 용서받이 6명, 그저 구타 당함 18명, 대항 5명, 일시 도망 6명으로 31명(89%)은 구타하는 남편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였다. 학대 남편의 성장배경을 보면 정상가정 3명, 결손가정 7명, 결합가정 13명, 청소년기 이탈 11명으로 32명(91%)이 정상가정 출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입소시 본인 의견은 이혼하겠다 22명, 홀로서기 3명, 일시보호 10명이었으나 입소후에는 이혼 4명, 홀로서기 9명, 일시보호 4명, 화해하겠다 18명으로 변화되었고 퇴소할 때에는 귀가 24명, 취업 5명, 직업보도 4명, 이혼 1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입소후 보호기간은 1주이내 12명, 2주이내 9명, 3주이내 6명, 5주이내 3명, 6주이내 5명, 8주이내 1명으로서 3주이내 까지가 26명(74%)였다.

이는 쉼터에서 부담없이 쉬면서 상담하고 스스로 생각기를 가지고 지난날 자신을 돌이켜 본 후 자녀 등의 책임과 남편의 자성된 변화 현상으로 입소시 심각했던 갈등과 분노가 다소 해소되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보호실 운영형태

광주 모자일시 보호실(쉼터)는 여성 회관 인근에 위치한 부녀 직업 보도시설의 2층 중 유휴공간 40평에 방 5개와 복도, 거실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실 2인 침대형으로 최대 보호인원은 10명이나 지금까지 방이 없어 되돌아간 사례는 없었다.

전화 및 내담자를 1차 상담후 희망에 따라 입소시키고 3일 이내에 2차 상담을 시행하여 입소자 의견에 따라 사후 상담지도를 시도하는데 입소과정에서 부터 퇴소시까지 여성 회관 상담실에서 상담원이 역할을 전담한다.

입소자 희망에 따라서는 가족상담은 물론 남편상담 요구시 상담실 방문을 유도하여 남편과 별도 개별 상담후 잘못된 남편의 역할을 인지시켜주고 부부는 동반자 관계임을 주지, 조정하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혼해야 할시에는 법적인 대응방안과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는 원칙적으로 미취학 아동만을 동반토록 유도하며 학생자녀는 남편이 학교에 추적, 쉼터로 찾아올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 동반을 거부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30일 더 연장해서 60일까지 보호한다. 시설측에서는 입소자 숙식 및 피복 등을 제공하여 필요시 단순 의료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경비는 구청에서 별도 지급한다.

94년도에 모자 일시보호실 보호자 주부식비, 피복비 등 실제 운영비는 780만원이었다. 시설 외부형태는 부녀 직업 보도 시설인 바 보호 중 필요시 바로 직업보도로 연계할 수도 있으며 외부에서는 쉼터의 흔적이 전혀 없어 아주 안전한 편이다.

다. 모자복지시설 설치기준

모자복지법 제 19조 제4항 (일시보호시설)에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교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는 일정기간 그 母와 아동 또는 母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0조(모자복지시설의 설치) 제 1항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모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항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모자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항 모자복지 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모자 복지 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일시보호시설 면적이 14,85 평원이며 부지면적은 건축면적이 2배로 되어 있고 종사자수는 8명으로 되었다.

라. 모자일시 보호소와 보호실의 차이

모자복지법 기준에 의한 독립된 모자일시 보호소를 설치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막대한 신규 투자(건물 150여평 이상과 부지등)와 여기에 수반된 시설 인허가 및 인력충원 각종 운영비를 포괄 상정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자일시 보호소에는 8명(시설장, 총무, 의사, 간호사, 조리사, 상담원, 사무원, 경비원)의 필수 직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 관리비가 별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자 주부식 및 피복비를 포함하면 독립된 신규시설 1개소에 대한 예산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며 이를 정부가 재정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시 보호실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유휴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그 시설 전체 인력자원에 전문상담원만 충원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상담소에서 출장근무할 수도 있고 또 입소자는 주부이므로 그들만의 자가취사도 가능하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예산절감이 된다.

따라서 시도 단위 지방 자치단체에서 당장 1개소씩 모자 일시보호실의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누군가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된다. 지금 국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은 보다 확충해야 하지만 아동복지 시설(영,육아원)과 부녀복지시설(모자, 미혼모, 자립장, 직업보도 등)은 입소자 감소 등으로 대부분 시설에 유휴공간이 있다.

다음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독립시설의 경우 “00 모자 일시보호소”라는 간판을 정문에 표기해 두면 일반 주민은 이곳에 오는 여성은 남편에게 매맞고 피난은 아내들이라는 시각을 떨쳐버릴수 없어 보호자가 아주 싫어한다. (비밀보장 역행)

3. 피해자 보호시설 필요인가

가. 사례

결혼 29년째인 한 입소자의 사례를 들어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내담자(47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국졸후 산업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중 18세때 9세 연상인 남편(58)을 만나 친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동거로 시작, 결혼하여 5남매 (1남 4녀), 장녀 29세(결혼), 차녀 26세(미혼모), 삼녀 24세(회사원), 사녀 21세(회사원), 막내가 20세 아들(무직)을 두었다.

남편도 농촌 출신으로 국졸 후 방황하다 취업 중에 만났고 함께 살면서 보니 생활이 무계획적이고 책임감 마저없고 난폭하며 매사 부정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으나 ‘내운명이다’하고 생각해 감수하고 살아왔다.

10대에 엄마가 되었고 당장 생활할 수 없어 식당 등에 출,퇴근 하면서 스스로 경제 활동하여 가정을 꾸려 왔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으로는 자신만 쓰고 외박, 이중생활 등 반복하면서도 결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도 나타났고 이어 구타로 이어짐.

10년전에 아파트 관리인으로 취업되었다. 작년 봄 정년 퇴직한 상태로 지금은 부직으로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의심하고 전혀 밖에 못나게한 상태로 24시간 잠을 자지않고 감시하는 심각한 입장인 바, 서울 친정 동생집으로 가출했다 귀가하는 등을 반복하다 쉼터에 왔었다.

남편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시댁쪽 두분 형이나 남동생도 무관심한 입장이었다.

내담자는 보호된 후 남편이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이므로 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료가 요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영장도 없고 환자 데려와야하나 사실상 치료를 불가피하다 하여 기도원까지 타진했음에도 그런 사람은 갈 수 없었다.

시내 가출후 집안에서 구제않고 있었기에 현재 내담자는 별거를 위해 식당에서 숙

식제공받고 취업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미 결혼한 장녀도 혹 남편이 아버지 본받을까 조마조마하며 다른 딸들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두렵다고 장래를 불안해 하고 있다.

가해자인 남편 한사람만 강제퇴거 및 격리수용 치료를 하면되나 현재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출하고 자녀들은 불안과 공포속에서 안절부절하며 친정쪽 가족도 불안해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보다 가해자 격리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례다.

나. 대응방안

위 사례로 볼때 현재 부부와 미혼자녀 4명 외손자1명 결혼해서 이웃에 살고 있는 장녀 내외, 외손자 2명 등 직계가족 10명이 가해 남편 1명 때문에 불안해 하고 이웃에서도 근심걱정인 상태에서도 무방비로 가정 폭력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소 설치보다 가해자 격리치료, 강제퇴거, 수감명령제도 등 가해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

쉼터 보호자들의 가족 구성원 형태도 자녀 2명 이상이 19세대인데 이들은 대부분 차라리 남편없이 애들과 따로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희망하나 남편이 기어이 찾아와 괴롭히니 그것도 불가능 하다고 호소한다.

가해자 한사람때문에 4명 이상의 가족이 피난처로 대피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닌가? 우리모두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4. 맺음말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성인이 된 후 독립된 한여성과 한 남성이 이성간에 서로 사랑하고 삶의 동반자로 함께할 필요에 의해 자신이 결정하여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다. 그런 좋은 특별한 관계임에도 결혼후 남편은 일방적으로 아내 인격을 무시하고 학대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니 다른 측면으로 볼때 우리사회 여건은 아직도 그점을 순용하고 받아들이고만 있다.

너무 잘못된 것이나, 이에 따른 실제 도우미는 학대받고 피해자가 되는 여성 자신들

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혼과 동시에 부모가 지어준 고유명사인 여성 자신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새댁, 자기, 여보, 아가”로 엄마된 후에는 00엄마로 불리우고 있음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스스로 00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다.

다음 아들을 못낳으면 여자가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아들, 딸 한명씩 두자녀를 둔 경우에도 어딘지 아들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딸에게는 양보하는게 미덕인 양 가정지도 하는게 우리 어머니들이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은 남자는 우선이며 여자는 가정에서 남자 다음이어야 함을 배우고 성장한다. 그리고 갈등 상대인 아버지, 어머니 삶의 모습에서도 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하고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면서도 인내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구타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함께 살아온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삶이 인생의 산 교육장임을 알고보고 배우면서 성장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그점을 당연시 하게되는 악순환이 되었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부모가 자주 싸우고 서로 인격무시하며 구타하던 아버지 모습을 보고 공포와 증오감만 키워 오면서 자란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 인성 자체가 불안전하고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최악의 교육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편의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마냥 참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빨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찾아야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덜 주게 된다는 점이다.

남편의 경우는 구타 행위가 반복되면서 자기 내부에서 구타 충동이 주기적으로 발동하는 심리 현상이 일어나고 구타 습성이 길어질수록 더 가학적이고 악랄한 방법이 동원되며 그 결과를 즐기는 정신질환 상태로 발전한다.

가정폭력 가정의 주인공인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 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막아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 노력해야 도움 받을 수 있음이다. 이에 가정의 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온다는 것을 다함께 인식하면서 사회문제의 시각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시설측면은 따로 시설을 확보하는 쪽보다는 가해자를 분리 치료내지는 잘못된 점을 자각할 수 있는 강제 규제조치가 완벽하여야 하며, 그래도 시설이 필요하다면 각기 요보호 대상별로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일시보호시설 및 방법이 있으므로 일정기간 각기 분리되어 그 가정의 고통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내들의 쉼터는 최소한 시도별로 1개소씩 일시보호소가 아닌 일시보호실로 설치 운영 되었으면 한다.

가정내 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에

이 상덕

(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가정 폭력에 관한 입법은 민사사법적 및 형사 사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사법적 대응은 주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산에 관한 불평등조항들을 개선하고 가해 당사자에게 특별 조치를 하는 것이고, 형사 사법적 대응은 가정 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형사 사법 절차 및 형벌 정책이 될 것이다.

미국의 예가 되겠지만 이하에서 연방법, 뉴욕주법, 캘리포니아주법의 가정 폭력에 관한 법 규정들을 비교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명칭과 정의

(1) 캘리포니아 제 6211 조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이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학대 행위이다.

§ 6200. 약칭

이 章(division)은 인용시 「가정폭력방지법」이라 칭한다.

§ 6201. 적용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서는 이 節(Part)의 정의를 따른다.

§ 6203. 학대(Abuse)

“학대(Abuse)”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신체적 상해 및 성적 폭행을 야기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현저한 중상해의 불안상태에 처하게 하는 행위 및 이의 시도를 의미한다.

§ 6205. 인척관계(Affinity)

혼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인척관계(Affinity)”라 함은, 혼인의 결과로 인하여 각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 간에 성립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 6209. 동거인(Cohabitant)

“동거인(Cohabitant)”이라 함은 동일 주거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前동거인”이라 함은 과거에 동일 주거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뉴욕주

481-a. 입법결정과 목적

지난 십년 간, 가족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들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긴장을 유발하였다. 가족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결과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와 학사의 빈번성으로, 이는 전국적인 아동학대와 학사집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살인의 거의 1/5과 더 많은 정도의 폭행이 가족구성원들 간에 집 내에서 발생한다.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생활방식으로서의 폭력의 용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약물과 알콜중독, 교육과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의 태도도 들 수 있다. 성인가정폭력사건과 아동학대와 학사(세대간 가정폭력도 포함)사건으로서 보고된 것은 끊임없는 가정폭력의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학사와 가정폭력(세대간 가정폭력을 포함) 방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William B. Hoyt Memorial children and family trust fund를 위한 재원이 가정폭력 방지와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증가시킬 새로운 원천이 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다. 입법은 이 재원이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연방이나 주, 지방정부로부터 일상적으로 가능한 다른 재원 대신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연방법 10408

(1) “가정폭력”이란 개인의 강력한 억류를 포함하여 위협적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a) 그 결과 육체적 상해나 그러한 위협을 낳고

(b) 한 개인이 혈연이나 결혼관계, 법적인 연관이나 합법적 동거등의 다른 사람(노

인 포함)에게 행사한다.

- (2) "인디안 부족"과 "부족조직"이란 25편 450 b 조의 (b) (c) 항에서와 같은 뜻이다.
- (3) "장관"이란 보건 및 인보국 장관을 의미한다.
- (4) "쉼터"란 정부법규에 따라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그 의존자에게 긴급 피난처와 쉼자리, 음식 등 관련지원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 (5) "관련지원"이란 -
 - (A) 가정폭력 상황의 가해자, 피해자, 의존자에 대한 상담(확장하여 전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도 포함할수 있다)과 자조서비스, 적절한 의료서비스(알콜음, 마약 남용 치료 포함)
 - (B)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그 의존자를 위한 음식, 의복, 아동보호, 호송, 긴급서비스(의료서비스를 위한 상환은 아님)
- (6) "정부"란 여러주들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Guam, American Samoa, the Virgin Islands,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등

2. 목적 선언

(1) 캘리포니아

§ 6220. 목적

이 章(division)의 규정은 ①폭력 및 성적 학대의 재발 방지, ②가정폭력 관련 당사자들을 상당기간 분리함으로써 당사자 스스로 폭력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뉴욕

481-a. 입법결정과 목적

지난 십년 간, 가족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들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긴장을 유발하였다. 가족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결과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와 학사의 빈번성으로, 이는 전국적인 아동학대와 학사집계

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살인의 거의 1/5과 더 많은 정도의 폭행이 가족구성원들 간에 집 내에서 발생한다.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은 생활방식으로서의 폭력의 용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약물과 알콜중독, 교육과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의 태도도 들 수 있다. 성인가정폭력사건과 아동학대와 학사(세대간 가정폭력도 포함)사건으로서 보고된 것은 끊임없는 가정폭력의 일부만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학사와 가정폭력(세대간 가정폭력을 포함) 방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William B. Hoyt Memorial children and family trust fund를 위한 재원이 가정폭력 방지와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증가시킬 새로운 원천이 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다. 입법은 이 재원이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연방이나 주, 지방정부로부터 일상적으로 가능한 다른 재원 대신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연방법

10401 목적 선언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정부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그 의존자들에게 긴급쉼터와 관련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며
- (2) 정부, 지방공공기관(법 집행기관 포함), 비영리 민간기관, 기타 그러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적 원조와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

3. 보조금 지급

(1) 캘리포니아

(2) 뉴욕주

459-b조.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주거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grants

1. 이상의 것을 위해서 인정된 한도 내에서, 위원은 당국이 승인한 신청인에게 재원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재원은 자격있는 신청인이 사용한,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의 변제에 의하지 않는 승인된 운영비용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승인된 운영비용은 당국이 규정하며 공공보조와 보호의 자격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포함하되 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들 중 어떤 것도 당국이 이러한 승인된 운영비용의 부족을 메울 만한 보조금을 주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2. 위원은 이 조항에 의한 모든 보조금을 적당한 지역사회서비스위원회에 통고해야 한다.

459-c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보조금

1. 위원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진다. (i)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비경쟁적인 사항 (ii) 주거·비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적인 사항 (iii) 비이익단체에 대한 훈련과 기술지원의 경쟁적인 사항 (iv) 재정압박으로 인해 폐쇄 위기에 처한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보조금을 위한 비경쟁적인 사항. (i)(ii)(iii)항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은 서비스가 없거나 낮은 서비스의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의 시작, 기존의 서비스의 확대, 移住서비스의 보급과 공동체교육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2. 보조금은 위원이 마련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주어지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 서비스가 주어지는 지리적인 지역

(b)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

(c) 프로그램의 질

(d) 재정적·행정적 발전가능성

3. 위원은 이 조항에 의한 모든 보조금을 적당한 지역사회서비스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59-d조. 자격의 기준

1. 당국의 요청에 의해, 이 조항에 의한 재원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인은 그 상세한 운영계획안과, 연간예산, 그리고 재정의 안정성과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988년 4월 1일이나 그 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 동안에 보조금은 당국이 정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이것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a)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인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필요성

(b) 공적부조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신청인이 피난처와 서비스의 수혜에 도움을 주는 정도

(c) 긴급피난처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월평균점유율

(d) 승인된 운영비용의 제공에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이용되는 사적인 자금의 정도

(3) 연방법

10402 조 10403 공인된 정부명시 보조금

(a) 장관권한 ; 신청 ; 요구사항 ; 승인

(1) 가정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그 의존자들에게 긴급 쉼터와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유지하고 확장함을 돕기 위해, 장관은 이 장(chapter)에서 언급한 규정과 더불어 정부명시 보조금을 줄 권한을 갖는다.

(2) 그러한 보조금을 원하는 주요 정부 행정관료가, 장관이 근거있게 요구한 시간과 요구방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 항(subsection)과 같은 보조금은 지급될 수 없다.

각 신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본 항에서 제공되는 자금은 지방공공기관과 비영리 민간조직(종교, 자선조직과 자원협회 포함)에 명시 보조금으로 분배되어, 가정폭력사건을 막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그 의존자에 또 다른 폭력사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쉼터와 관련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쓰인다.

(B) 특정 회계연도에 이 항에 의거 정부에 제공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a) 정부행정비용은 자금의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b) 이 항에 의거 자금을 분배할때, 정부는 비영리 민간기구에 의해 수행된 효과적인 지역사회기반 프로젝트, 특히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그 의존자를 위해 쉼터를 운영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상담, 알콜 및 마약치료, 자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특별한 강조점을 둘 것이다.

(C) 학식있는 개인들과 관심있는 기구에 고안된 절차를 공개하며, 도농간에 보조금을 균등히 분배함을 확실히 한다.

(D) 이 장에 의거 정부가 수행하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활동의 행정에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의 조정에 정부기구의 책임을 명시한다.

(E) 절차상, 본 장에 의거 지원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받은 개인에게는 기록의 비밀을 확실히 하며, 컴퓨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의거 컴퓨터시설의 주소나 위치를 확실히 하되, 공개하지 않는다.

(F) 이 항에 의거 자금을 영수한 후 1년 이내에, 장관은 정부가 공동주거지로 부터 가해자를 퇴거하도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다.

(G) 장관은 이 장의 목적과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타당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장관은 이 항의 요구를 충족하는 신청은 승낙해야하며, 불승인의 의향이 타당하다고 인지된 후가 아니고 결격사유를 수정할 기회를 주지않은한, 어떠한 신청도 불승인해서는 안된다.

(b) 인디안 부족과 부족조직; 신청

(1) 장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그 의존자들에게 긴급쉼터와 관련 지원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프로젝트를 위해 인디안 부족과 부족조직에게 보조금을 줄 권한이 있다.

(2) 장관이 이 장의 목적과 규정이행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대로 정보에 맞게 시간과 방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항에 의거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될수 없다. 이 항의 (a)(2)의 (C)(D)(E)와 같은 경우이다.

(c) 자금 제한

특정 회계년도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어떤 단일기구에는 이 조(section)에 의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일 기구에 보조금의 총액이 15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d) 피해자나 의존자에게 직접지불

이 조에 의거 지불된 보조금을 통해 지급된 자금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의존자에게 직접지불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e) 소득 수혜자격기준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을 받고 지원되는 서비스의 수혜자격과 관련, 어떤 소득 수혜자격기준도 개인에게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f) 정부의의 기구에 대한 보조금; 지역분

그 기구가 이 장하에 제공되는 자금총량의 비율에 따른 지역분을 제공하지 않는한, 정부의의 다른 기구에게 이 항에 의거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첫 해는 이 명목으로

35%의 보조금을, 두번째 해에는 55%를, 세번째 해에는 65%를 받는다. 공공기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그러한 조직이나 기관의 지역분의 50%는 민간자원에서 나와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되는 지역분은 현금이나 현물일수 있다. 지역분은 이 장의 어떤 당국이 제공한 지역자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g) 쉼터와 관련지원

장관은 이 항의 (a)(b)에 의거 자금의 적어도 60%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의존자를 위한 긴급쉼터나 관련자원을 제공할 목적을 가진 기구에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10403조. 자금할당

(a) 할당비례; 최소할당

특정 회계년도에 10409조에 의거 정부에게 총당된 총액에서, 각 정부는 10402(a)에 의거 보조금지불을 할당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인구에따라 해당되는 총액의 비가 결정된다.

(1) 각 주는 적어도 다음 양보다는 크게 할당해야 한다.

: 10402(a)에 의거 가용한 보조금 양의 0.5% 혹은 5만 달러

(2) Guam, American Samoa, the Virginia Islands,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는 10402(a)에 의거 가용한 벌금양의 0.8%를 각각 할당받아야 한다.

위에서 계속된 문장에서 "정부"라 함은 Guam, American Samoa, the Virginia Islands,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를 포함하지 않는다.

(b) 주의 인구결정

이 조의 목적 상, 각 주의 인구와 모든 주의 전 인구는 최근 센서스자료를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장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장관은13편(Title)의 181조에 따라 상공부가 제공하는 연례 '중간보고자료'를 사용한다.

(c) 과세경감; 추가재원의 이용성 증대

이 편의 10402(a)조에 의거 당국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10409조에 의거 총당된 총액이 불충분하다면, 그 때는 모든 주가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양에 대해 과세경감 조치한다. 추가 재원이 당해 회계년도에 가능할 경우는, 경감된 양과 같은 증가되어야 한다.

(d) 재할당; 재원의 계속 이용

(1) 이 편의 10409조에 의거 총당한 금액에 대해 그 회계년도 6개월 말에, 정부에

할당된 양이 보조금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10402(a)조의 보조금에 적절치 못하면, 장관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재 할당해야 한다.

(2) (1)에 의거 재할당을 통해 가용해진 재원은 그 해 남은 회계년도 말까지 지출될 수 있다.

4. 가정 폭력 방지 특별법의 내용

(1) 캘리포니아 긴급 보호 명령

Part 3. EMERGENCY PROTECTIVE ORDERS 긴급보호명령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일반규정

§ 6240. 定義

이節에서 사용될 때,

(a) “사법관(judicial officer)”이란 제6241조에 의해 선임된 판사, 수임인, 중재인을 의미한다.

(b) “경찰(law enforcement officer)”이란 이節에 의한 긴급보호명령을 신청 또는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1) A police officer

(2) A sheriff's officer

(3) A peace officer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4) A peace officer of the California State Police

(5) A peace officer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olice Department

(6) A peace officer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nd College Police Department

(7) A peace officer of the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as defined in subdivision (g) of Section 830.2 of the Penal Code.

(8) A housing authority patrol officer, as defined in subdivision (d) of Section 830.31 of the Penal Code.

§ 6241. 긴급보호명령의 구두발부를 위한 판사, 수임인, 중재인의 선임

각 county 최고법원의 판사는 법원의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전화 등의 방법

으로 긴급보호명령을 구두 발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판사, 수임인, 또는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Chapter 2 ISSUANCE AND EFFECT OF EMERGENCY PROTECTIVE ORDER

긴급보호명령의 발부와 효력

§ 6250. 발부 사유

사법관(judicial officer)은 경찰이 다음 각호의 하나 혹은 兩 사유를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긴급보호명령(ex parte emergency protective order)을 발부할 수 있다:

(a) 명령신청인이 명령발부대상자의 최근의 학대 및 그 위협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가정폭력 위협에 처해 있는 사실

(b) 아동이 가족 및 동거인의 최근의 학대 및 그 위협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학대 위협에 처해 있는 사실

§ 6251. 법원의 사실발견(Findings of court)

긴급보호명령은 사법관(judicial officer)이 다음 각호의 兩 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a) 현재 및 급박한 가정폭력 위협의 현존 또는 아동이 현재 및 급박한 학대 위협에 처해 있음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의 존재

(b)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발생 또는 재발의 방지에 긴급보호명령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 6252. 긴급보호명령에 포함 가능한 기타 명령

상당한 경우에는 긴급보호명령에 다음 각호의 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다.

(a) 제6821조에 규정된 바의 보호명령

(b) 위협에 처한 자(the endangered person)와 명령발부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결정하는 명령

(c) 위협에 처한 아동(보호대상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의 제한대상당사자 아닌 부모 또는 후견인의 가정의 다른 미성년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의 실시 규정을 포함하는,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13.5조에 근거한 명령

§ 6253. 명령의 내용

긴급보호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a) 명령신청 사유

(b)명령의 유효기간 종료일

(c)보호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지역(district) 및 카운티(county)의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소재지(주소)

(d)영어와 스페인어로 기재된 다음 사항:

(1)“보호대상자 수신: 이 명령은 上記일자까지만 유효하며, 계속적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上記법원에 명령을 신청하여야 함. 장래의 법원 명령 신청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명령 신청에 있어 즉각적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음.”

(2)“제한대상자 수신: 이 명령은 上記일자까지 유효함. 그러나 보호대상인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더욱 지속적인 제한 명령을 받아낼 수 있음. 위 신청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위 신청에 대응함에 있어 즉각적인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음.”

(e)보호대상아동의 경우(보호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기재된 다음 사항:

“이 명령은 上記일자까지만 유효하며, 上記법원에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13.5조에 규정된 바의 더욱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더욱 지소것인 제한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

§6254.명령의 이용가능성; (학대로 인한) 동거 중지의 효과
위험에 처한 자(the endangered person)가 학대를 피하기 위해 주거를 떠난 경우 이 사실은 긴급보호명령의 이용가능성(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255.명령의 평등한 발부(Issuance of orders without prejudice)
긴급보호명령은 평등하게 발부되어야 한다.

§6256.명령의 유효기간 종료일
긴급보호명령은 다음 각호 중 먼저 도래하는 日時에 유효기간이 종료한다:

(a)발부일 이후 제5개정일에 법원사무가 종료하는 때

(b)발부일 이후 曆으로 算하여 7일째 되는 날

§6257.<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13.5조상의 제한명령(restraining orders)의 신청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명령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 으로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또는 현재 보호대상 아동의 일시적 양육담당자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13.5조상의 제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Chapter 3 DUTIES OF LAW ENFORCEMENT OFFICER 경찰의 의무

§6270.명령의 서면 신청

긴급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찰관은 서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6271.명령 신청 경찰관의 의무

긴급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찰관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a)합리적으로 주소 확정이 가능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명령을 송달할 것

(b)보호대상자에게 명령의 사본을 송달할 것. 보호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가 주소 확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또는 일시적 양육담당자에게 명령의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c)발부 즉시 명령 사본을 등재해야 한다.

§6272.명령의 집행; 명령집행공무원의 책임

(a)경찰은 긴급보호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b)선한 의도에서(선한 목적으로)(in good intention) 긴급보호명령을 집행하는 경찰은 민·형사상 면책된다.

§6273.경찰의 명령 사본 송달 의무

긴급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찰은 직무 중(while on duty) 명령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2) 뉴욕 국의 설치

575조.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뉴욕주국

1. 국의 설치. 행정부 내에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뉴욕주국”을 행정부 내에 설치하며, 이하 “局”으로 칭한다.

2. 의무와 책임. 국은 주정부가 가정폭력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정부와 주의회에 조언을 해야 한다. 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국은 가정폭력분야의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대표적인 조직에 자문을 구해야 하며 가정폭력피해자와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3. 활동. 또한, 국은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원조하고 교육과 보호, 훈련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관계된 이러한 활동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 (a)정보와 자료를 공급하는 홍보기관으로서의 역할
- (b)지역봉사와 州전체의 공공교육의 개발과 협동
- (c)전문가교육의 개발과 시행. 다음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i)가정폭력
- (ii)육체적·정신적 건강
- (iii)사회·인간 복지
- (iv)공교육
- (v)법집행과 형사정의
- (vi)알콜과 약물중독
- (d)학교단위의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촉진
- (e)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과 대응에 관해 주와 지방정부, 기타 기관,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술적인 원조의 제공
- (f)주기관간의 기관간 협력, 그리고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여러가지 다른 수준과 서비스제공의 정부내 협력의 장려와 촉진
- (g)가정폭력서비스와 피해자의 후원자로서의 활동
- (h)국 자체의 발안에 의해서, 또는 정부나 의회, 서비스제공자의 요구에 의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필요성을査定
- (i)가정폭력과 다른 문제간의 관계의 연구와 효과적인 대책의 권고
- (j)자료의 수집, 조사시행, 여론 수집
- (k)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의 활동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정부와 의회에 제출

(l)그 외 다른 법의 규정에 모순됨이 없이 이 조의 범위 내에서 가정폭력방지의 촉진에 필요한 규칙과 규율의 제정을 포함한 활동

4. 자문위원회. (a)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가정폭력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 권고하며, 효과적인 개입과 공공교육, 홍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과 우선사항의 개발을 원조하고,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州기관간과 정부, 州, 연방과 공동체간의 다양한 기관의 협조와 교류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b)자문위원회는 9인의 위원과 12인의 직권위원(ex-officio)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임기는 다음의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된다. 결원 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가정폭력분야의 전문가야 한다. 3

인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2인은 상원의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며, 하원의장의 추천에 의해 2인을, 1인은 상원의 소수당 당수의 추천에 의해서, 나머지 1인은 하원 소수당의 당수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직권위원은 다음의 各局과 부서의 대표로 구성된다: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health;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mental health; division of alcoholism and alcohol abuse; criminal justice service; probation and correctional alternatives; division for women; for youth; crime victims board;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 (c)주지사는 자문위원장을 임명한다.
- (d)자문위원은 장이나 집행 감독관(executive director)의 필요에 의해 모이되, 1년에 2회 이하여서는 안 된다.
- (e)자문위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보수나 보상도 받을 수 없으나 예산위원이 승인한 항목에 관해서는 사용가능한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상 생긴 실제적이고 필요한 비용의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직권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의 활동에 관하여 그들이 속해 있는 각 기관에서 받는 보수 외의 다른 부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5. 집행 감독관. (a)주지사는 局의 집행감독관을 임명한다.
- (b)집행감독관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부가 정한 年보수를 받으며 직무수행과 관계된 상당한 비용의 반환도 받을 수 있다.
- (c)집행감독관은 위원을 임명하고 효율적인 局운영을 위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6. 다른 기관의 지원. 局은 다른 department, division, board, bureau, commission or agency of the state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와 지원은 이 條에 의한 권한과 의무의 적절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연방법 장관의 조치

10404조. 장관의 책임

(a) 장관은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보건 및 인보국의 피용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항에 의거 임명된 개인은 가정폭력 예방과 서비스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1) 보건 및 인보국내의 모든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그 밖의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및 지원을 포함하는 모든 지방 프로그램을 조정하며, 보건 및 인보국내의 노인행정분야 및 국립노인연구원과 협력하여 노령자에

대한 위와같은 활동을 보장한다.

(2)(A) 가정폭력의 원인, 예방, 확인, 치료에 대해 조사연구를 한다. (예를 들면(a) 여러대안 - 유치, 벌금, 개별이든 합동이든 상담프로그램, 기구에서 가해자를 제거하는 법원보호명령 사용등 - 을 통한 반복적인 가정폭력사건의 효과적인 감소. (b)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노인학대에 대해 필요한 위임기록의 필요성과 영향)

(B) 숫적 증가나 심각도를 포함하여 노인연구원과 협의, 노령자의 학대, 유기, 착취, 의 국가적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한다.

(3) 인력훈련을 제공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프로그램 수행에 기술적 자원을 제공한다.

10405조. 평가

1984년 10월 9일 이후 처음으로 이 편의 10402(a)에 의거 자금이 의무화된 이후 2년이 되기전에, 장관은 이 장에 따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되었는지(특히 가정폭력의 반복사례와 관련하여) 검토평가하고 의회의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이 편의 10402(a)(2)(F)항에 의거 장관에게 제공된 assurances도 요약해야 한다.

10406조. 차별금지

(a) 연방 재정원조 수령; 차별금지유형

(1) 1975년 연령차별금지법, 28편 794조에 의거한 불리한 조건, 1972년 교육법, 1964년 시민권 법령의 5편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조항에 바탕을 두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부분에 쓰이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가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연방재정원조를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간주한다.

(2) 어느 누구도 이 장에 의거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성이나 종교에 따라 참여가 배제되어서는 안되고, 수혜가 거부되어서도 안되며,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정규운영에 타당하게 필요한 직업자격이나 프로그램 요소에 성이 특별히 중육한 경우에 개인의 성을 고려하지 않고 포함시키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장관은 1964년 시민권 법령 602조에 상응하는규정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그 법 603조는 장관이 그러한 행동을 밀고 나갈때 쓰일수 있다. 이 문장은 다른 법적 수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b) 순응 확보를 위한 공고와 요구;법무부장이나 기타 장관조치에 의뢰

이 장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은 정부나 기타 기구가 이 항의 (a)(1)항에 언급한 규정이나 (a)(2)항이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르지 못할 때는 언제나, 장관은 국가의 주요 집행관에게 알리고 순응을 확보할 것을 집행관에게 요구한다. 만일 적정 기일내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주요 집행관이 순응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관은-

(1) 미국의 법무부장에게 적절한 민사상조치를 자문의뢰하고

(2) 1964년 시민권 법령의 6편, 1975년 연령차별 금지법, 1972년 교육법의 7편이나, 29편의 794와 794a조 등에서 제시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거나

(3) 법에 의해 기타의 조치를 취한다.

(c) 법무부장의 민사상의 조치

(b) (1) 항에 따라 법무부장에게 사건이 의뢰된 경우, 정부나 기구가 (a)(1),(a)(2)항에 언급된 법 규정을 어기는데 관련되었다고 법무부장이 얻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언제나, 법무부장은 구제명령을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를 위해 미국의 지역법정에 민사상 조치를 내릴수 있다.

10407조.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국가 정부 분류정리국

(a) 장관은 다음을 위하여 가정폭력(노인학대 포함)의 예방에 대한 국가 정보및 연구국을 운영한다.

(1) 가정폭력의 사례와 예방(특히, 반복적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그 의존자에게 제공하는 긴급쉼터 및 관련지원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만들고 분석하고 보급한다.

(2) 가정폭력 사건의 예방과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그 의존자들에게 긴급쉼터와 관련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능한 지원의 선택적 출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b) 장관은 (a)항에 의거 운영되는 국가 정보 및 연구국의 활동이 이 편 5101조에 의거 아동학대 및 유기에 관한 국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부국과 조정되도록 한다.

5. 기타 가정 폭력 방지 관련 규정

(1) 캘리포니아

Part 4. PROTECTIVE ORDERS AND OTHER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ORDERS 보호명령, 기타 가정폭력 방지 명령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일반규정

§ 6300.affidavit에 의한 명령 발부

법원이 affidavit에 의해 과거의 1회 이상의 학대행위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를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관련당사자 간의 분리기간 확정을 위하여 통지(notice) 여부에 무관하게 이節에 기하여 제한명령을 발할 수 있다.

§ 6301.명령발부대상자:(명령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자)(persons who may be granted order)

(a)제6211조에 규정된 자는 이節에 기한 명령을 발부 받을 수 있다.

(b)청구인이 학대를 피하기 위해 주거를 떠난 경우에도 구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에 있어 이혼·혼인무효·법정별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302.명령에 기재되는 통지(notice)의 형식

이節에 의해 발부되는 명령에는 다음의 통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한대상자에게의 통지: 이하에 기재된 법원에서의 의견진술절차(the court hearing)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원은 추후의 통지 없이 3년 이내의 기간으로써 신청된 바의 명령을 발부할 수 있음.”

§ 6303.가정폭력 피해자의 보조자(support persons); 권한과 의무; 법원의 재량

(a)보조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자에게 도덕적·심리적 원조를 주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 보조자는 양당사자의 출석을 요하는 절차에서의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면 동안 피해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끔 도와야 한다. 보조자는 법률자문이 아니며 법적 조언을 해서는 안된다.

(b)보조자는 제6218조에 규정된 바의 보호명령을 위한 절차에 동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경우 통상 당사자와 변호사를 위한 좌석에 보조자가 당사자와 동석할 수 있다.

(c)법원이 보호명령을 발부한 경우, 보조자는 반대되는 규정의 존부를 불문하고 제3201조에 규정된 절차 이후의 조정절차 동안 보호대상자인 당사자와 동석할 수 있다. 가정법원 송달 책임자는 명령의 보호대상자인 당사자에게 조정절차 동안 보조자와 동석할 권리가 있음을 조언해야(알려야) 한다. 조정자는 보조자가 조정절차에 참가하거나 변호사로서 활동하거나 특정 보조자가 조정절차에 지장이 되는 경우 보조자

를 조정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보조자의 동석이 조정의 비공개성의 예외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조자는 조정의 비공개성(비밀 유지 의무)을 준수해야 한다.

(d)이條에 따른 절차에서 가정폭력이 주장되거나 그 위협이 있는 경우 보조자는 법정에 당사자와 동석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변호사와 당사자를 위한 좌석에 보조자가 당사자와 동석할 수 있다.

(e)명령의 보호대상자인 당사자에게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자에 대해 법정 불출석을 명하는 법원의 재량행사는 이條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 6304.보호명령;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설명 의무

제6218조에 의해 양당사자의 출석下에 보호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피청구인은 총기류의 구입 및 양수 또는 그 시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의 고지와 폭력에 대한 형벌의 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자 모두에게 명령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6305.상호명령(mutual orders); 당사자의 직접 출석; 증거

양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학대 또는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6320조에 규정된 바의 당사자의 특정 학대행위를 금하는 상호명령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증요구의 요건이 불필요함에 동의할 때에는 서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Chapter 2 ISSUANCE OF ORDERS 명령의 발부

Article 1 Ex Parte Orders

2 Orders Issuable After Notice and Hearing

3 Orders Included in Judgment

Article 1 EX PARTE ORDERS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명령

§ 6320.접촉금지명령

법원은 일방당사자에게 상대방당사자 또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재량으로 판단한 특정 가족 구성원 내지 동거인과의 대면·폭행·위협·성적 학대·구타·통화·학대 목적의 지속적 우편 접촉 또는 평안의 방해를 금지하는 ex parte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6321.동거 금지의 ex parte 명령

(a)법원은 주거의 사용 및 임대 관계에 관계 없이, 일방당사자에게, 가족의 주거·상대방당사자의 주거·양당사자의 일상적 주거·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과 조

건에 따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아동의 보호양육지에서의 동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제(a)항의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기존의 주거에서 거주를 계속할 당사자에게 주거의 추정적 점유권이 있음을 법원이 확신하기에 충분한 사실

(2)동거금지명령의 대상자인 당사자가 상대방·상대방의 보호양육을 받는 자·또는 양당사자 내지 상대방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폭행을 위협하는 사실

(3)동거금지명령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상대방의 보호양육을 받는 자·또는 양당사자 내지 상대방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해악이 초래되리라는 사실

§ 6322.특정행위금지의 ex parte 명령

법원은 일방당사자에 대해 제6320조 또는 제6321조의 명령의 실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ex parte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6323.미성년 아동에 관한 exparte 명령; 일시적 양육; 방문

제3064조에 따라:

(a)법원은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미성년 아동의 일시적 양육을 결정하는 ex parte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법원은 통일 친자관계법(:the Uniform Parentage Act)(제3절, 제7600조 이하) 위의 이혼·혼인무효·법정별거 소송절차에서 또는 本章 규정 중 혼인관계에 있는 양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개시된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조건에 의해 미성년 자녀를 방문할 당사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ex parte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6324.부동산 및 동산(real or personal property)에 관한 ex parte 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부동산 및 동산의 일시적 사용·점유·관리관계와 명령의 유효기간 중 지급기가 도래하는 지급액 등의 부담관계를 정하는 ex parte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6325.공유재산·준공유재산·개별재산에 관한 ex parte 명령

법원은 제2045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 공유·준공유·개별재산에 관해 배우자에게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ex parte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6326.신청 수리일 당일 내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 결정

이 Article에 규정된 ex parte 명령은 법원에 신청이 수리된 당일에 발부 또는 기각된다. 단, 너무 늦게 접수되어 효과적 검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접수 익일에 법원서기에 의한 접수에 충분한 시간 경과 후 명령을 발부 또는 기각한다.

§ 6327.ex parte 명령; 제2장 제4절의 적용

이 Article에 의한 ex parte 명령의 발부에는 제2장 제4절(제240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2 ORDERS ISSUABLE AFTER NOTICE AND HEARING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 이후 발부 가능한 명령

§ 6340.Article 1에 의한 명령의 발부

(a)법원은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 후 Article 1(제6320조 이하)에 규정된 각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법원은 명령이 발부되지 않으면 상대방·상대방의 보호양육을 받는 자·또는 양당사자간 내지 상대방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해악이 초래되리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6321조에 규정된 바의 동거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6341.추정적 父에게 자녀 부양비의 지급을 명하는 명령

(a)제7611조상 피청구인이 미성년 아동의 生父이며 청구인이 同아동을 양육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법원은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 후 일방당사자에게 통일 친자관계법(:the Uniform Parentage Act)(제12장 제3절, 제7600조 이하)에 기한 소송에서 확정되는 상당의 부양비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b)이 조에 의해 발부되는 명령은 통일 친자관계법(제12장 제3절, 제7600조 이하)에 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342.배상명령

(a)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법원은 다음 각호의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피청구인에 의한 학대가 직접 원인이 된 의료비 및 주거비 또는 학대에 의한 신체상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한 소득 감소액 또는 지출액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명령

(2)일방당사자에 의한 ex parte 명령이 발부되었으나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에서 명령발부사유가 불충분했음이 판명된 경우, ex parte 명령에 의해 초래된 지출의 배상을 청구인에게 명하는 명령

(3)학대의 직접적 결과 또는 이로 인해 초래된 신체상해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

공된 公·私的 기관의 서비스의 합리적 비용을 배상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명령

(b)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이 條의 배상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 6343. 상담에의 참여 명령

(a) 양당사자가 동거를 지속할 의사가 있거나 이전의 가정폭력 이후 동거해 온 경우, 법원은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면허 소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또는 전신건강 상담을 포함한 적합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제한대상당사자에게 폭행자 (batterer) 치료 상담에 참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b) 일방당사자가 위증죄 부담부 서면에 의해 가정폭력을 주장하는 시점에 양당사자간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거나 제6218조의 보호명령이 유효한 상태이거나 당사자가 명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별개의 기회에 개별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법원은 제한대상당사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폭행자 치료 상담에 참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c) 별도의 상당한 분담 방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상담 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 6344.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의 지급 명령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 후 법원은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6345. 명령의 존속기간

(a) 이 Article에 의해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 후 발부되는 명령은 법원에 수리된 서면 약정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따라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b) 명령 발부시 존속기간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발부일로부터 3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c) 이 조의 규정은 영구존속기간을 갖는 명령의 서면 약정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Article 3 ORDERS INCLUDED IN JUDGMENT 판결에 포함된 형식의 명령

§ 6360. 보호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판결

이혼·혼인무효·법정별거 절차, 이 章에 기한 절차, 또는 통일 친자관계법(제12장 제3절, 제7600조 이하)에 기한 소송의 판결은 제6218조의 보호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 6361. 판결에 포함된 형식의 명령의 표명

명령이 판결에 포함된 경우, 판결에서는 다음 각호의 兩者를 명시해야 한다:

(a) 판결문 중 명령 부분

(b) 명령의 존속기간 종료일. 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법원이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령의 존속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Chapter 3 REGISTRATION AND ENFORCEMENT OF ORDERS

명령의 등재와 집행

§ 6380. 집행기관에의 송달

법원은 이 章에 기한 명령 또는 명령의 수정·기간 연장·기간 중단 문서의 사본과 이의 수령증서를, 청구인의 주거·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양육 당사자의 주거·기타 법원이 결정한 바 청구인과 他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정폭력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집행기관으로서 청구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지정한 집행기관에, 당해 명령 또는 기간 연장·기간 중단·수정 문서 발부일의 종료 이전에 청구인 또는 그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전달케 하거나 카운티 서기에게 우편발송케 할 것을 명한다.

§ 6381. 명령의 집행가능성; 집행기관의 사본 수령

(a) 제6380조와 本條 제(b)항에 의해 발부된 명령은 캘리포니아 州 內 전역에서 집행 가능하다.

(b) 경찰이 제6380조에 의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명령의 사본을 송달받았거나 명령 집행 경찰관이 명령의 사본을 제시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경찰은 이 章의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

§ 6382. 경찰의 명령 관련 정보 사용

각 집행 담당 기관은 신고된 가정폭력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이 章에 의한 명령의 존재와 내용과 현 상황에 관한 정보를 현 검토 체제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6283. 명령의 송달

(a) 이 章에 의해 발부되는 명령은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의 양당사자를 포함한 신고된 가정폭력 현장의 담장 경찰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송달할 수 있다.

(b) 신청 당사자는 경찰관에게 부기된 명령 사본과 교부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

찰관은 이를 실현하여 발부 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c) 송달 증서는 송달 당일에 서명된 것으로 추정한다(반증 가능).

§ 6384. 명령의 직접 송달이 불요한 경우

(a) 이 장에 의해 발부되는 명령에 기재된 자가 직접 명령을 송달받지(는) 못했으
나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명령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명령의 존재와 내용을 실
질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송달 증서를 명령 집행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b) 이 장에 의해 발부되는 형식의 명령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당사자가 명령이 발부되는 의견진술절차에 직접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의 송달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6385. 법무부에의 통지; 민사 책임

(a) 제(b)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청구인의 주거에 관할권을 갖는 집행기관
은 제6218조에 규정된 바의 보호명령과 이의 송달 증서를 수령하는 즉시 성명·인종·
출생일 및 법무부 규정 형식에 따른 인적 사항, 명령 발부일자와 명령의 존속 기간 또
는 만기일을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b) 양당사자가 명령이 발부된 의견진술절차(hearing)에 직접 출석한 사실과 제
6384조 목적상 송달 증서가 불필요함이 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條의 목적을
위한 보호명령 송달 증서는 불필요하다.

(c) 청구인이 법무부에 제한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보호명령의
무효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d) 법원이 제 (a)항에 규정된 바의 보호명령의 수정·기간 연장 및 기간 중단을
결정한 경우 법원은 청구인의 주거지에 관할권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집행기관은 법무부에 즉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e) 형법(the Penal Code) 제12021조 제(g)항에 규정된 자가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
·양수하거나 이를 시도하여 이 총기에 의해 인적 상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총기 보유
권한이 있는 자가 총기 소지를 금지당하고 이러한 과오가 본條에 규정된 법원의 통지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경우,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집행기관 및 법무부의 고용
인은 민사 책임이 없으며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6386. 변호사 선임;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의 지급

(a) 법원은 제6218조에 규정된 보호명령 내용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서 청구인을
대표할 변호사를 그 재량에 의해 선임할 수 있다.

(b) 제(a)항에 의해 법원이 절차 중 (개인)변호사를 임명하는 경우, 법원은 피청구

인에게 청구인측 변호사 비용 등 합리적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6387. 청구인에게의 명령 사본의 교부

법원은 이 장에 의해 발부되는 명령과 同명령의 수정·기간 연장·기간 중단 결정의
사본을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인지를 첨부하고 부기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5
부를 교부할 것을 카운티 서기에게 명해야 한다.

§ 6388. 명령의 고의적 위반; 벌칙

제6218조의 보호명령의 고의적 위반은 형법(the Penal Code) 제273.6조에 의해 처벌
된다.

(2) 뉴욕주

576조. 구타자 프로젝트(Batterers project)

1. 정의.

(a) “구타자 프로그램”은 의뢰인과 학대적 행위자를 돕기 위한 구타방지와 교육서비
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승인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의 불법성
과 학대적인 행위자의 책임과 그에 대한 대책 등 가정폭력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집단토론;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장기집단(long
term group); 지방형사체제와 가정폭력프로그램과의 공식적이고도 확립된 관계.

(b) “의뢰인client”은 가정법원, 형사법원 또는 대법원의 명령에 의해, 혹은 州나 지방
또는 사적인 기관에 의해 구타자프로그램에 의뢰된 사람, 또는 스스로 의뢰했거나 구타
자프로그램이 수용한 사람을 말한다.

(c) “가정폭력프로그램”은 social services law 459-a section의 subdivision 4에 규정
된 주거프로그램을 말한다.

(d) “가정폭력”은 social services law 459-a section에 언급되고 정의된 행위를 의미
한다.

(e) “局office”은 이 장에 의해 설립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뉴욕주 局을 말한다.

2. 구타자 프로그램의 확립: 권한부여authorization. (a) 局은 규정된 한도 내에서 郡
내의 적어도 5개의 구타자 프로그램의 설치를 계약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도
연간 5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b) 이 항에 의한 계약을 승인함에 있어서, 局은 도시, 농촌, 교외의 郡간의 조화의

확립을 추구해야 한다.

(c) 局은 가정폭력프로그램접근권이 없는 군 내의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한 계약은 승인해서는 안 된다.

(d) 이 항에 의한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 그리고 그에 의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局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가정폭력분야의 전문가나 조직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3. 구타자프로그램의 설치; 자격(eligibility). 이 항에 의한 계약의 승인 전에, 局은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다음을 명기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a)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명세서

(i) 서비스대상인원

(ii) 프로그램 목표

(iii) 교육지침과 집단토의, 장기집단(long term group)을 포함한 방지와 교육서비스의 실시계획

(iv) 법원이나 의뢰기관의 프로그램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보고절차

(v) 프로그램의 연간예산, 이미 확립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해 수혜한 재원이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다른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재원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포함한다.

(vi) 지역가정폭력프로그램과, 사법, 보호관찰, 경찰, 그리고 변호사 등 지역형사사법절차와의 공식적이고도 확립된 관련성 혹은 그러한 관련성의 계획

(vii) 프로그램의, 현존하거나 계획된 공동체 교육요소

(viii) 제공될 예정인 다른 어떤 서비스

(ix) 당국이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정보

(b) 가정폭력프로그램, 형사사법절차, 그의 적절한 기관과 서비스의 지원과 협조의 보장

(c) 프로그램이 당국이 정의하는 부부상담이나 조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장

(d) 구타자프로그램이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보장

(i) 구타자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은 의뢰인

(ii) 자살과 의뢰인에 의한 살인위협

(iii) 당국의 기준에 의해 비밀에 부쳐져야 할 사항

(e) 이에 의해 당국이 요구하는 정해진 훈련프로그램과 평가과정에 구타자프로그램이 참여한다는 보장

4. 구타자프로그램의 설치; 승인(approval). 이 항에 의거한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있어, 당국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계획된 구타자프로그램이 군 내의 어디에서 시행되건 간에, 사법, 시행, 보호관찰, 기소정책의 결합과 발전을 포함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된 형사적 대응의 존재 또는 확립가능성 여부

(b) 구타자프로그램의 설치가 사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 이는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식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c) 이러한 구타자프로그램의 설치를 피하는 조직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능력의 유무

(d) 이러한 구타자프로그램을 피하는 조직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성 평가에 있어 당국과 협력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가의 여부

(e) 기타 이 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당국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5. 훈련과 기술원조. (a) 당국은 보호관찰과 교정형 부서(division)와 협조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계인을 훈련시키며, 사법, 경찰, 변호인 등의 형사사법체계와 다른 지원 서비스, 다른 적절한 기관과 서비스 가정폭력프로그램과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법에 의해 인정되는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기술원조와 훈련을 제공하고 부과해야 한다.

(b) 당국은 보호관찰과 교정형부서와 협조하여 지역계획과 정책, 사건의뢰 절차, 협조, 적절한 기관 또는 개인과 의뢰인과의 연결의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보호관찰과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6. 평가와 보고. (a) 당국은 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이에 근거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당국은 평가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폭력분야의 전문가와 조직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율성을 측정해야 한다.

(i) 프로그램 시행과 운영의 평가는 다음의 요소를 검토한다.

(A) 나이, 교육, 소득, 지위, 결혼상태, 자녀의 수와 그들의 나이, 알콜이나 약물 사용, 가정폭력의 개인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의뢰인에 관련되는 적절한 요소들

(B) 프로그램에 의뢰된 총의뢰인 數와 의뢰원천別 數

(C)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인원총수와 그 이유

- (D)프로그램에 등록된 의뢰인 수, 프로그램을 마친 수, 마치지 못한 수와 그 이유
- (E)단체미팅의 수
- (F)그의 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ii)프로그램결과의 평가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프로그램 의뢰 전의 비공식적인 가정폭력사건의 보고, 프로그램 참가 중과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기간 동안의 적절한 간격에 의한 폭력사건의 발생

(B)그의 결과의 평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b)당국은 표준화된 자료수집도구와 자료수집을 위한 절차, 그리고 (a)에 정한 평가를 위한 정보의 비밀성 원칙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당국은 가정폭력문제의 전문가나 조직에 이러한 도구, 절차, 지침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고려해야 한다.

(c)당국은 계획의 시행과 운영, 평가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1993년 5월 15일 이전에 정부,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a)에 규정된 각 요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되, 계획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권고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당국은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폭력문제의 전문가와 조직에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고려해야 한다.

(d)또한, (c)의 최종보고서는 계획을 고안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평가를 122222포함해야 하며 그 평가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에 관한 의견도 포함해야 한다.

(3) 연방법

10410조. 법 집행훈련, 기술원조비 및 계약

(a) 지역기반 프로그램

어떤 회계년도에 이 편 10409조에 따라 충당된 양에서 장관은 지역기반 훈련과 기술 원조 목적으로 지역의 인력과 주 법집행기관에 보조금을 마련하고 계약을 맺어, 가정폭력사건에 대응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b)경쟁부여; 사정기준; 학대받은 가족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보고서; 지역의 법집행인력 정보; 기록의 비밀 유지

(1) 보조금

이 조에 의거한 보조금과 계약은 장관이 요청하는 바 정보와 assurance을 포함한 지원

에 기초하여 경쟁적으로 부여된다. 수혜자를 선정하는데있어서 장관은 지역의 인력과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법집행기관을 준비하는데 효과성을 입증하는 자를 택하고, 법 집행관이 가정폭력 사건에대해 향상된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개발하고 표명하고 보급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2)(A) 장관은 다음의 목적으로 가정폭력쉼터, 사회서비스기관, 병원 등과 협력하는 지역 법 집행기구에게 보조금이나 계약을 준다.

배우자나 법 집행사무관, 병원인력, 사회서비스 인력, 교육 상담인력, 기타가정폭력인에 관련된 인력에 의해 확인되는 특정시점에 학대받은 각가족원에게 제공할 책자를 개발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aa)사법권한에 학대받은 가족원의 권리 포함

(bb)학대받은 가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입, 치료, 지지서비스 등

(A)(ii)와 같은 서비스의 전화번호와 주소

(ii)학대받은 가족원에게 가정폭력쉼터, 병원, 사회서비스, 법집행관 등이 관찰 가족원 육체적 손상 技術을 포함한 서술보고서를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한다.

(iii)가정폭력 쉼터, 지역사회사업인력이 관련 학대받은 가족의 동의하에 가족과 집행기관의 첫 접촉을 기술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지역법집행인력으로부터 가족원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체계를 개발한다.

(B)장관은 유지된 기록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확실한 절차를 개발한다.

(c)법무부장에 대한 권한대표와 자금이전

장관은 미국 법무부장에게 이 조를 이행할 장관의 책임을 대표하도록 임명하고, 이 조에 의거한 보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각 회계년도 당 이 편의10409조에 의거 충당된 자금에서 2백만 달러를 초과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전하다.

10411조 삭제

10412조 장관의 권한: 정부와 지역 법해석

(a)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필요에 의해 인력의 보충을 정하고 확립한다.

(2)필요에 의해 5편 3109조에 정해진 정도로 전문가와 顧問의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서비스를 조달한다.

(3) 공공기구나 비영리 민간기구에게 보조금을 주고 공공기구나 민간기구와 계약을 맺는다.

(4) 이 장의 목적과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규제를 한다.

(b)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적절한 정부권한을 대신하여 아동학대혐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의 요구사항적용을 바꾸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10413조. 가족구성원 학대정보 및 문서계획

장관은 직접적이든 보조금에 의하든 계약에 의하든-

(1) 가정폭력과 관련한 인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개발한다.

(2) 가정폭력쉼터, 병원, 사회서비스, 법집행인, 공식 민사, 형사조치 등에서 나온 상해 기초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그 의존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문서를 제공한다.

(3) 이 조에서 분류된 자료에서 개인에 관련된 기록이 비밀이 보장되도록 절차를 확실히 한다.

'가정폭력방지법(가칭)'의 입법방향

이 찬 진(변호사)

1. 머리말

여성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의 범위와 그 방향은 결국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과 그 대응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가정폭력이 한국사회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입법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태분석은 더욱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사회연대성의 원칙'이라는 사회복지적인 문제로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법의 입법의 필요성은 바로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의 보호를 통한 '사회보호'라는 측면에서 공인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바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적극적인 사법 및 경찰서비스의 입법화가 관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국민적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방지 서비스전달체계의 수립과 사법 서비스 전달체계를 입법화하는 방향의 접근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와같은 접근방법은 현단계의 한국사회의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와 소극적인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의 낙후라는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하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특히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전향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로 하며, 몇가지 법률의 개정(특히, 사법제도와 경찰법령의 개정)이라는 어려운 작업이 요청되지만 정부 등 입법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입법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코네티컷주 등 가정폭력방지 입법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 단계의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 사법서비스 제도에 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분

석의 틀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92.5,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에서 표본조사한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2.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가.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입법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이 단지 ‘가정내에서의’ 학대 당하는 노인, 아내 또는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접근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위 법률의 본질적인 보호범의 범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데 두어야 한다.

나. 소위 ‘가정폭력’의 개념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즉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족구성원의 정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아내)인 친족, 친형제관계등에 국한되어 법률상 정의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적어도 1)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2) 사실혼 관계의 자 및 종전 관계자 3) 양당사자간에 친생관계가 추정되는 등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3자 상호간(여기에는 자녀의 노인학대문제와 부모의 아동학대를 포함한다.) 4)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3자 상호간(계모, 계부의 문제) 5) 동거, 친족상호간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주의 구성원들 상호간의 폭력관계 역시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족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회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입법시 가족구성원의 개념은 위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다.

다. 입법시 ‘아내학대’의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의 문제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제기는 주체로 여성계에서 해왔다는 특수성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폭행’(아내학대)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축소되어 논의되어 온 경향이 크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동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문제가 가족영역에서 아내학대에 버금가는 가정폭력의 문제로서 대두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안동현, 홍강의 저 “한국에서의 아동구타현황” 1989. 아동학대예방학회 참조) 그럼에도 ‘아동학대’의 문제는 현행 가족법 구조상 자녀가 부모의 친권의 대상으로 규율되는 관계로 부모의 양육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부모 공통의 의식구조때문에 은폐되어 왔고 이를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 방치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학대’의 문제 역시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질 뿐 산업화 및 핵가족화하는 사회에서 특히, 노후소득에 대한 별다른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대당하는 노인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시에는 반드시 “아동 및 노인 학대방지”라는 관점도 관철되어야 될 것이다.

라.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라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은 ‘가족의 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정폭력의 방치는 결국 부부의 이혼문제나 가출아동문제 등을 통한 요보호아동, ‘유기된 노인들’을 양산하는 등 궁극적으로 해당 가족공동체의 사실상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며, (가정 환경상실 어린이는 부모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92년도에 5만 7천쌍의 부부가 이혼하였는데 지난 20년간 이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혼자사는 가구도 15년간 3.6배나 증가하여 1백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소년, 소녀가장도 93년도 7천3백22명으로 8년 전보다 50%나 증가하였다. 이혼 사유의 과반수 가량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94년 5월 14일 통계청 가정현황 보고서, 국민일보 95.5.14) 설사 이와같은 가족의 해체가 없더라도 ‘폭력적 성향’의 재사회화 내지는 재생산구조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따라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가 되어 1) 가정폭력의 치료와 예방사업을 위한 조직적인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2)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서비스 및 치료,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개입 등을 “가족지원 및 보완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연계운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피해가 중한 경우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적 대책이 전제되거나 최소한 이와 병행되어 이와같은

사회복지적 관점이 반영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은 당해 폭력의 태양에 따른 기존의 실정법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같은 사회복지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내용으로 아내학대를 주안점을 두어서 가해자인 남편의 구속 등 형사 강제처분을 효율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 개입 및 형사 사법권발동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이라는 법률 효과를 달성하는데 현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런지는 몰라도 결국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통한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한다는 악결과만을 초래하는 또 다른 무익한 입법이 될 위험이 크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형사처분을 수반하는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족구성원 상호간에는 현재보다도 더욱 크고 집요한 사후적 분쟁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가족구성원 중 특히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삶의 터전인 가정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대책이 없이 단지 처벌법으로서의 형사특별법적 관점의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바. 가정폭력에 관대한 국민일반의 규범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홍보프로그램이나 이에 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이나 형사사법적 대책의 입법에는 가정폭력에 관용하는 사회적 규범의식을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국가적인 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제1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 입법 방향

현재 가정폭력에 관한 형사사법적 대책에 관한 국민일반의 의식구조는 민사적인 관점의 비중이 크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일종의 격리명령조치에 대하여는 1198명의 각 계 각층의 남녀 동수의 표본조사자중 942명이 찬성하여 응답자의 78.6%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2) 폭행가해자로 하여금 재산처분금지하게하는 잠정처분에 대하여는 1,052명이 찬성하여 응답자의 87.7%가 찬성하였으나 3) 형사사법적으로 구타남편을 사건발생 즉시 무조건구속하는 특별법에 대하여는 331명이 찬성하여 응답자의 27.6%만

이 찬성하고 있다.(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p 178 표8-8 참조) 이 글에서는 이와같은 국민일반의 입법의식을 고려하였고, 가정폭력 문제는 세계 각국중 특히 미국에서 극심한 사회문제로 국가적 과제로 취급되어 왔고, 이에따른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일련의 입법 역시 매우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미국법제는 앞으로의 입법 또는 법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입법방향을 모색하였다.

3.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방향

가. 총 칙

(1)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1)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이나 관계구축 등 1차적 예방 2) 폭력발생시의 초기단계에서의 피난처나 치료의 제공을 통한 2차적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충분히 규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칭 '가정보호국 내지 가정보호과'등의최소한의 직제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및 예산 책정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국가책임과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총론적인 부분을 정리한 후 각론 사항으로서 각종 사회복지대책(이는 민사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진다.)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법규를 규정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를 두고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폭력이나 흉기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의 경우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한다.

이에 관한 시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법은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보호,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 보호,유지 책임

1항 : 국가와 국민은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폭력발생시의 피

난처와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이하의 행정기관 경찰관서에 해당 직제를 설치하고 전문공무원을 육성,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사이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형법상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단,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는 위협이 현존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제외한다.

(구성요건을 엄격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상호간을 말한다.

가.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나. 사실혼 관계자 및 종전 관계자

다.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3 당사자

라.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3당사자

마. 동거친족 상호간

3. "1차적 예방"이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도록 가족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을 회피하기 위한 가족이나 세대구성원 또는 장래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2차적 예방"이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 초기상황에 개입하고 현재의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문제의 확대를 방지한 것으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난처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자조집단의 조직 및 유지,발전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가서비스의 제공 등 가정폭력에의 대응 및 치유,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제공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정보호처분"이라함은 가정폭력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심리,결정하여 발하는 각종의 긴급명령, 보호명령 등 일체의 제한명령 등을 말한다.

나. 제2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1)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는 주거 및 비주거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각각 이에대한 피난처나 의료서비스와 상담등의 제공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같은 서비스 공급주체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영리단체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가정(소위 '안전한 집' 개념)을 이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에 관하여는 소위 빈곤선,혹은 최저생계선 또는 그 이상 등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일정소득이하의 자에게는 무상으로, 기타의 자에게는 일정한 비용산정방식에 의한 서비스요금을 청구(후불제)하는 규정을 둔다.

또한 교육기관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됴으로써 가해자 본인에 대한 구타방지와 교육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인된 '구타자 교육 과정(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2) 가정폭력방지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조직 구축 내용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각종 제한명령을 집행할 담당 경찰관들의 조직,운영 및 임무를 규정하고 교육명령을 집행할 담당공무원의 조직,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임무내용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의 후원자로서 해당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지며 각종 교육과 보호, 직업훈련과 기술제공을 위한 2차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 가족의 원조등에 대한 정책 개발등으로 명시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민간 비영리단체와 가정등의 공공적인 감독과 전문가 교육개발, 기술적인 원조의 제공등,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시행, 여론수집 활동등 각종 복지행정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둔다.

다. 가정보호처분

(1) 가정폭력사건의 관할

(가)가정폭력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은 형사사법에 의한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에 있다고 할 것이나 가정폭력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일반형사적 처분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관련 당사자들의 사법적인 분리명령에 의한 당사자 스스로의 폭력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사적 실현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이와같은 중간단계의 과정을 가정보호처분제도로 칭한다.

(나) 가정폭력사건은 1) 긴급보호명령의 경우에는 일반형사사건처럼 검찰에 의하여 수사권이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에 의하여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이 인정되고 동 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의 가정폭력전담판사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을 송치하고 인신구속 등에 관한 영장발부 등 강제처분여부를 품신하여 담당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2) 기타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기타 최소한의 범위내의 이해관계인(긴급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 긴급보호처분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사건은 일반보호처분청구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위 사건은 송치한 담당 경찰관에 의하여 당사자 대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법원의 명령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가정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과 각 지원별로 사법부의 업무분장에 따라 가정 '가정보호처분 전담부' 또는 '가정보호처분 전담판사'를 구성하게 하여 위와같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청구된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본건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보호처분(또는 명령)에 관한 심리, 결정을 전담하게 한다.

(다) 가정보호처분 전담부 및 전담판사의 업무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당사자등에 의하여 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본 법에서 정한 중범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를 첨부하여 즉시 검찰로 위 사건을 이송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보호처분의 심리를 개시하여 각종 임시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2) 가정보호처분의 종류

여기에는 긴급보호처분과 일반보호처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1)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명령 2) 가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에의 위탁명령(구속영장의 발부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규정한다.) 3) 임시퇴거명령 4) 임시친권명령 5) 임시부양명령 6) 금전배상명령 7) 기타 명령(교육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명시한다.

(3) 가정폭력사건의 사안별 처리

(가) 긴급보호명령

1) 긴급한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한 담당경찰관은 명령청구인이 청구서상에 주장하는 가해자의 최근의 폭력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가정폭력 위험에 처해있는 사실 관계를 주장하면 24시간(또는 48시간)이내에 이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에게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과 2) 아동이 가족구성원의 최근의 학대 및 그 위협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학대 위험에 처해있는 사실 등을 가해자의 상대방인 부모 또는 후견인, 양육담당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담당판사에게 직접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과 이를 확인한 담당경찰의 직접 청구를 하는 2중적 청구방식을 규정하도록 한다.

2)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는 경찰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전송문서(신속한 접수를 위하여)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담당 경찰에 대한 전화상의 확인 등에 의하여 위와같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에서 보호명령을 발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둔다.

3) 긴급보호명령의 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가해자의 보호시설에의 초일시 위탁을 명하는 것과 위험에 처한 피해자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피난처나 안전한 집 등 주거 및 비주거 보호프로그램에 위탁과 각 지원 접근방법 프로그램에의 위탁등)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보호명령서에 앞서 규정한 각종 처분 중 합당한 처분을 기재한다.

(나) 기타 일반보호명령

가) 위와같은 긴급보호명령에 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일반보호명령청구사건으로 심리를 개시하고, 긴급보호명령사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건 역시 일반보호명령사건으로 이에 관한 심리를 개시한다.

나) 일반보호명령의 내용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결정하되, 심리기간은 2개월 이내로 집중심리, 결정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다.

(4) 가정보호처분의 강제력 확보장치

가정보호처분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몇년이하의 징역 또는 소정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확보한다.

법원이 발하는 각종 명령서에도 이와같은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위와같은 법원의 각종 처분시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청구인과 가해자, 경찰관에게 각기 명령서등본을 1부씩 교부하여 보관토록 한다.

가정보호처분이 발부된 당사자간에 위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받은 담당경찰관은 반드시 가해자를 입건한 후 담당 재판부 또는 판사에게 이를 송치한다. 이를 송치받은 담당 재판부 및 담당판사는 필요적으로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심리 후 일반형사사건으로의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검찰로의 이송 또는 또다른 가정보호처분을 발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또한 각종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부가하는 규정을 둔다.

(5) 시설위탁명령의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

긴급보호명령중 위탁명령의 집행개시요건은 담당판사로부터 명령이 발부될 경우 담당 경찰관(집행기관으로 규정한다.)이 그 전송문서사본에 의하여 24시간(또는 법률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긴급보호명령청구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관할 법원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다.

(6) 당사자의 합의와 가정보호처분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대하여 긴급보호명령 또는 일반보호명령에 관한 청구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히 발부된 각종 보호명령은 실효된다. 단, 가해자에 대한 시설위탁명령의 경우 위와같이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시에도 법원은 필요적으로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교육예방프로그램의 참여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변경된 명령을 발부하도록 한다.

(7) 가정보호처분의 법률효과

위와같은 민사적 보호명령은 해당 명령상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법률상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위 내용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조

항을 두고, 이에 관한 관련 당사자 및 경찰관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 등을 둔다.

라. 형사사법적 통제방법

상습가정폭력 또는 흉기등을 이용한 상해등 법률에서 엄격한 규정을 둔 소정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형사특별절차법으로서 피해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담당경찰관이 기초 사실관계를 24시간 또는 그 내외기간이내에 조사하여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에게 이를 송치하게 하고 이를 송치받은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는 일반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당일 즉시 결정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1)일반형사사건으로 할 경우는 그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검찰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게 하고, (형사이송처분이라고 명명한다.)

2) 일반형사처분으로 즉시 처리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형사이송처분을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형사이송처분의 집행정지' 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단기 시설 위탁 및 보호명령을 부가한다.

위 제도는 담당판사가 각종 보호명령 및 격리, 분리명령과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의 참여를 일반보호명령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중첩적으로 발부하고 위와같은 집행정지결정에서 결정한 소정의 유예기간(가령 6개월이나 1년 등)동안 판사가 발부한 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촉탁기관등으로부터의 결과보고 등을 참작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한 후 형사이송처분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게 한다.

3) 증거상 소정의 중대한 사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규정을 둔다.

가정폭력 사건 일지

1991. 2. 10년간 장이 파열되고 유산이 되는등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구타를 당해온 남희순씨가 (32세) 남편을 살해한 사건 발생. (여성신문 91.8.23)
- 1991.12 어릴때부터 자신들을 온몸을 빨래줄로 묶고 구타하는 아버지를 두 남매가 (14,16세) 할머니를 설득해 고소한 사건발생.(동아 91.12.14)
1992. 1 광주에 살던 흥모씨가 3살된 딸이 울자 귀찮다며 목졸라 살해한후 암매장. (한국 92.1.30)
1992. 2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결혼후 11년간 판사인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해온 정모여인이 남편을 고소(경향 92.2.13)
1992. 2 남편의 구타에 못이겨 가출했던 아내를 남편이 독살한 사건(경향 92.2.26)
1992. 2 처남의 집에서 “왜 내동생을 학대하느냐”는 처남의 말에 격분해 처남과 조카를 칼로 살해(동아 92.2.29)
1992. 4 화교인 왕모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태국으로 도망 (중앙 92.4.8)
1992. 4 대구 안모의사가 결혼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다고 아내를 폭행. (한국 92.4.9)
1992. 4 딸인 최모양이 실종되었다고 조작해 폭력을 피해 도망한 아내와 아이를 찾으려한 사건(한겨레 92.4.25)
1992. 5 서울 도봉구 김모여연(26) “매맞으며 사는것보다 죽는데 낫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동아 92.5.9)
1992. 5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부인을 3층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림(동아 92.5.18)
1992. 5 혼수가 적다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부산의 송모씨를 폭력으로 구속 (한국 92.5.29)
1992. 6 서울 서초동에서 재수생인 아들이 십수년 동안 가족을 폭력의 공포에 떨게했던 아버지를 살해(경향 1992.6.29)
1992. 7 평소 아버지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신모씨를 아버지와 아내가 살해 (경향 92.7.20)

1992. 8 서울 양모씨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토막살해(동아 92.8.31)
1992. 8 부모의 부부싸움을 비관한 고교생 외아들 자살(중앙 92.8.31)
- 1992.10 12년간 술을 마시고 아내를 구타하다 처갓집이 자신을 푸대접한다고 장인, 장모 부인, 딸을 도끼로 살해(한겨레 92.10.13)
- 1992.11 부모의 잦은 싸움을 비관해 어린 두자매 농약먹고 음독 자살 (조선 92.11.4)
- 1992.12 남편의 구타로 집을 나갔다 들어온 아내를 장인이 있는 자리에서 과도로 찢러 죽이고 방안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사건 (92.12.10)
1993. 1 남편의 외도를 만류하는 부인을 공기총으로 쏘 살해한 사건 (한겨레 93.1.1)
1993. 2 20년간 남편에게 구타당하던 김모 부인이 (47)이혼을 요구 함의 이혼서류를 쓰다가 남편에게 수술칼로 찢림 (한국 93.2.17)
1993. 2 14년동안 남편에게 갖은 수모와 폭행을 당해오다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던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부산의 이형자씨 사건발생(한겨레 93.6.20)
1993. 4 부부싸움을 하던 김모씨가 말다툼 하던 끝에 공기총을 오발하여 부인 임모씨 살해 (동아 93.4.6)
1993. 6 임신한 아내와 전세금 때문에 말다툼하던 남편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후 암매장 (조선 93.6.16)
1994. 1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상습구타자인 아버지를 살해(한국 1.16)
(94년 5월현재 1심재판중이며 이 여대생은 아버지가 자신을 심하게 구타하여 스스로 자해해서 죽은것이라고 진술함)
1994. 1 23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씨 사건 발행
1995. 3 18년간 자신과 어머니 어린여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 사건
1995. 3 남편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학대에 시달려온 김명희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1995. 6 13년간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구타와 학대에 시달려온 최현옥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Faint,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The text is arranged in approximately 15 horizontal lines across the page.

